

I. 출제경향 분석

출제영역		문항수	총평 및 향후 수험전략	
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		(1) 문제유형분석 1) 조문과 판례(신판례 포함) ① 조문형 : 10문제(규칙 지문2개 출제) ② 판례형 : 3문제 ③ 조문·판례 결합형 : 7문제 2) 박스형과 4지선다형 ① 4지선다형 : 15문제 ② 박스형 : 5문제 (2) 문제 출처 분석 1) 기존 기출영역(최신 기출영역 포함) ① 기존 기출 된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95% 출제 됨 ② 최신 기출문제의 수정반영 경향이 뚜렷함 2) 기본서 및 기출문제집(최신 기출문제 반영) ① 기본서 : 출제는 기본서 영역을 벗어나지 않음 ② 기출문제집 : 기출문제집의 기출지문이 대부분 반복출제 3) 최신판례 : 최신 판례가 다수 출제되는 최근 경향 (3) 향후 수험대책 ① 정확한 수험이해(출제영역 이해) ② 정확한 내용이해(출제영역에 대한 의미파악) ③ 조문과 판례(신판례포함)를 통한 형소법 최종정리 ④ 반복적 암기 (4) 향후 수험대비 일정계획 1) 13년 1차대비 ① 조문과 판례 : 조문과 판례 정리(11~12월) ② 최종정리 및 암기 : 기본서 및 조문판례(1,2월) 2) 13년 2차대비 ① 수험이해 : 강의 및 기출문제집 활용(11~12월) ② 내용이해 : 강의 및 기출문제집 활용(1~3월) ③ 조문과 판례 : 조문과 판례 정리(4~5월) ④ 최종정리 및 암기 : 기본서 및 조문판례(5~6월)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		
2편	수사의 기본이론	1		
	임의수사	1		
	대인적 강제처분	3		
	대물적 강제처분	1		
	수사의 종결	2		
3편	공소 일반			
	공소의 제기			
4편	공판절차의 기초지식			
	소송의 주체	3		
	공판심리의 범위			
	공판절차의 진행	3		
5편	증거법 서설			
	증거능력	2		
	증명력	1		
6편	재판 일반론			
	상소심절차	1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1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0편	종합형 문제			
총 평	전체적인 문제의 난이도는 中下 정도로 평가된다. 합격권에 있는 수험생들은 90점 이상은 확보했으리라 생각되고, 특히 기출문제를 충분히 분석하여 학습했던 수험생은 아주 쉽게 문제를 풀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 점을 수험생들은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내년 1차 시험도 강의를 통해 중요쟁점(기출중심)에 대한 정확한 이해(수험 및 내용)를 하고, 보충적으로 조문과 판례를 꼼꼼히 살핀 뒤 시험 임박해서는 최신판례로 보충을 한다면 충분히 내년도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I. 무료 해설강의 및 향후수험전략 일정

일시 · 장소	2012년 10월 22일(월) 16 : 40부터 - 대구 한국경찰학원 2012년 10월 24일(수) 15 : 00부터 - 부산 한겨레경찰학원
동영상 해설강의	우리샘 - www.woorissam.co.kr
수험상담	용두쌤의 以文會友 - www.cafe.daum.net/3slaw

1.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경찰청장이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③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사회보호법 규정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④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운동 부분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해설 ②

② X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미 수집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만으로 신체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거나 신체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없고**,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가 범죄현장에서 지문이 채취된 자 또는 지문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모든 국민의 **유죄추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자 99헌마 513, 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 ① O 헌법재판소 2004. 9. 23. 2002헌가17·18(병합) 전원재판부
- ③ O 헌법재판소 2005.2.3. 선고 2003헌바1 전원재판부
- ④ O 헌법재판소 2004. 12. 16. 2002헌마478 전원재판부

2. 다음 중 현행 형사소송법상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권리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진술거부권	㉡ 증인신문권	㉢ 관할이전의 신청권
㉣ 증거보전의 청구권	㉤ 구속적부심사청구권	㉥ 재정신청권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②

- 1) 피고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 : ㉢㉤ 2)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 ㉠㉡㉣㉥
- ㉠ 피의자에게 인정된 권리(제214조의2 제1항)
 - ㉡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와 재정신청이 허용된 일부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에게 인정된 권리(제260조 제1항)
 - ㉢ 피고인에게 인정된 권리(제283조의2 제1항)
 - ㉣ 검사와 피고인에게 인정된 권리(제161조의2 제1항) (※ 증인신문권(제161조의2)은 공판정에서 행해지는 인증에 대한 증거조사방법으로 검사와 피고인에게 모두 그 권리가 보장된다. 이와 비교하여 '수사상 증인신문청구권(제221조의2)'이 있는데, 이 제도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참고인이 출석과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게 증인으로 신문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로 구별을 요한다.)
 - ㉤ 검사와 피고인에게 인정된 권리(제15조)
 - ㉥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에게 인정된 권리(제184조 제1항)

3.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② 파기환송사건에 있어서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③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국가의 수사권은 물론 공소권, 재판권, 행형권 등의 행사에 있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고 그 신체의 자유를 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직위 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④

④ X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임의적 직위해제처분)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부분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5. 25. 2004헌바12). (※ 비교를 요하는 헌법재판소 결정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이 제3호 소정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93헌가3,7).)

- ① O 헌법 제27조 제4항, 제275조의2 ② O 대법원 2001. 11. 30, 2001도5225
- ③ O 헌법재판소 2001. 11. 29. 2001헌바41 전원재판부

4.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검사의 증거개시는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 이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포함한 전면적 개시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공소제기 전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 ② 검사의 증거개시 범위에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및 형사재판 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도 포함되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④

④ O 제266조의3 제3항
 ① X 증거개시는 공소제기 후에 한하여 인정된다(제266조의3 제1항).
 ② X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③ X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제266조의4 제5항, 제266조의11 제4항).

5.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소 또는 그 취소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리하여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소기간은 고소권자가 아니라 대리고소인을 기준으로 대리고소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③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상 고소권이 인정된다.
- ④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해설 ①

- ① X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 ② O 제266조 ③ O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3656 판결 ④ O 제233조

6.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은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하여야 하고, 영상녹화물의 방법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
- ㉡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 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全)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 ③ 3개 ④ 4개

해설 ②

- ㉠ O 제244조의2 제1항 ㉡ O 제244조의2 제1항
- ㉢ X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은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다(제312조 제2항).
- ㉣ X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244조의2 제3항).

7. 긴급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 ④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해설 ③

③ X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291 판결).

① O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② O 제200조의4 제6항 ④ O 제203조의2

8.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의자신문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변호인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 된다.
- ③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 ④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나,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는 이와 달리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이 인정될 수 없다.

해설 ④

④ X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도 이는 마찬가지로 인정된다**(대법원 1996.6.3. 자 96모18 결정).

① O 대법원 1990.8.24. 판결 90도1285 판결 ② O 대법원 1991.3.28. 자 91도24 결정
③ O 헌재결 2004.9.23, 2000헌마138

9.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 ②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 ③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 ④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해설 ①

① X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제130조 제2항). 그리고 범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제130조 제3항).

② O 제132조 제1항 ③ O 제132조 제2항 ④ O 제134조

10.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제184조)과 증인신문(제221조의2)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보전(제184조)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허용되는 것이나, 재심청구사건에서도 실제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증거보전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② 수사단계에서 검사는 증거보전(제184조)을 위하여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
- ③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동법 제163조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 ④ 증거보전(제184조)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으나, 증인신문(제221조의2)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해설 ③

- ③ ○ 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판결
- ① X 증거보전이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3.29. 자 84도15 결정).
- ② X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판결).
- ④ X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나(제184조 제4항), **증인신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일체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11.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하고,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 부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룰 수 없다.
- ㉣ 검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
-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③

- ㉠ ○ 제264조 제1항
- ㉡ ○ 제262조 제3항, 제262조의3 제3항
- ㉢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224 판결
- ㉣ ○ 규칙 제120조
- ㉤ X 검사는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제264조의2).

12. 다음 각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 체포영장의 청구서에 ()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현행범을 체포한 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① 58 ② 65 ③ 68 ④ 72

해설 ②

▶ 숫자의 합 = 7 + 48 + 10 = 65

- ㉠ 7일(규칙 제95조) ㉡ 48시간(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 10일(제202조)

13.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②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해설 ④

④ X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66조의7 제2항).

- ① O 제266조의5 제1항 ② O 제266조의8 제1항, 제4항 ③ O 제266조의7 제4항

14.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 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심원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선정기일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일정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해설 ③

③ X **검사와 변호인은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석할 수 있다(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 ① O 동법 제20조 ② O 동법 제6조 제1항 ④ O 동법 제32조 제1항, 제3항

15.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간이공판절차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고, 증거조사방식이 간이화된다.
- ④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설 ①

- ① X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전 소송절차에 대한 결정이므로 **항고할 수 없다**(제403조 제1항).
- ② O 제286조의2 ③ O 제297조의2, 제318조의3 ④ O 제301조의2

16. 배상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배상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②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③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④ 법원의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도 가능하다.

해설 ①

- ① X 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9조 제2항).
- ② O 동법 제31조 제1항 ③ O 동법 제33조 제4항 ④ O 동법 제25조 제1항

17.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②

- ③ ○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도4428 판결
- ① X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 ② X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18조 제2항 본문).
- ④ X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12.8. 선고 2005도9730 판결).

20.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 ②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 ③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면소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해설 ④

- ④ X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인 실체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면소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상고가 가능하다(대법원 2010.12.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 ① ○ 제341조 제1항 ② ○ 제342조 제1항 ③ ○ 제343조 제2항

용두샘의 두드림 형사소송법 수험서 출간 공지

1. 기본서 - 10월 말 출간

- ▶ 박용두 형소법의 개정판 **두드림 형사소송법**
- ▶ 2012년 8월까지의 신판례를 모두 반영
- ▶ 출제 포인트 음영 및 강조, 출제연도표기
- ▶ 오답유형 해당 항목에 적소에 제시

2. 기출문제집 - 10월 말 출간

- ▶ 정확하고 자세한 해설
- ▶ 2012년 경찰3차시험 까지 모두 반영
- ▶ 최근 기출문제 빠짐없이 수록
- ▶ 이 후 해당기출문제 카페 업데이트

3. 적중 모의고사 - 12월 말 출간 예정

- ▶ 적중률 높은 예상 문제로 구성
- ▶ 출제의 기본틀을 정확히 분석·유지
- ▶ 상·중·하로 분류한 3단계 모의고사

4. 조문과 판례 - 차후 공지

5. 쟁점정리 O·X 형사소송법 - 차후 공지

6. 형사소송법 핵심정리 O·X - 차후 공지